

(우) 04427 서울특별시 용신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5 / 전송(02)790-8911 보험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정책팀장 백영기(6581) / 팀원 김철욱(6575) / 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3252호

시행일자 2024. 6. 19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」 제정 안내

-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113호(2024. 6. 18.)
- 3. 위 관련근거에 의거, 보건복지부에서 「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」를 붙임과 같이 제정·고시한 바,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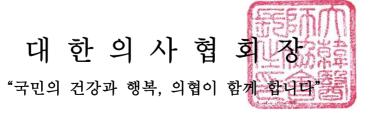
- 다음 -

가. 주요내용

-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등에 전자서명, 본인확인 서비스,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의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(안 제2조)
-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사유 규정(안 제3조)

나. 시행일: 2024.6.18.

붙임: 「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 1부. 끝.



수신처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